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2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 곽상도·태영호·이종배

황보승희 · 추경호 · 강대식

홍준표・윤한홍・조수진

양금희 · 김상훈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수업일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비상상황에 대 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 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수업"을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수업은 주간(晝間) • 전일제	②
(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 계절수업	
·시간제수업 또는 <u>방송·통신</u>	<u>방송·통신</u>
<u>수업</u>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
	격수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